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9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8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정('20.5.1.시행)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유지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, 명부 작성 · 관리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

- 연 1회 이상 공개모집, 명부 작성·변경 및 관리 (안 제4조~제6조)
-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취소 절차 (안 제7조)
-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
- 연 1회 이상 공개모집, 명부 작성·변경 및 관리 (안 제8조~제11조)
-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취소 절차 (안 제12조)

※ 건축물관리점검기관 : 건축물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실시
 해체공사감리자 : 건축물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, 해체공사 공정·시공·안전관리 등 감리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,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, 지정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물 유지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해체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2020년 「건축물관리법」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제도 이행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, 충청북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여, 상위 법령과의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

고자 하였음.

-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2장 ‘건축물관리점검기관’에 관한 사항으로서, 점검기관의 모집공고, 등재 및 명부 작성·관리,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점검기관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,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. 특히, 점검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을 예방하고, 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3장에 해당하며, 이 중 제12조까지는 ‘해체공사감리자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해당 조항들은 감리자의 모집 및 등재 신청, 관리, 지정·지정취소 절차,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이는 감리자 모집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,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등록·관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,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기반의 정보 공개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또한 감리자 및 점검기관의 자격 검증, 이력 관리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자격요건, 교육 이수 여부, 행정처분 이력 등을 지정·취소 기준에 반영하고, 도지사 및 시장·군수 간의 역할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한편,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,

1) 안 제13조(업무의 위탁) 중 “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대행하게 할 수 있다”로 수정 요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,

- 건축물관리점검 및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의 경우, 실무적으로는 각 시·군의 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건축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볼 수 있음.
- 또한, 업무의 특성상 단순히 ‘위탁’으로 한정할 경우 업무수행의 유연성과 실효성의 한계에 따른 실질적 업무처리에 곤란함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짐.
- 따라서 해당 조문을 “위탁할 수 있다”에서 “대행하게 할 수 있다”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2) 안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의 수정 요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,

-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서 출력되는 통보서 양식과 조례 별지 서식을 일치시키자는 제안으로, 서식 간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본 조례안은 관련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·지정·관리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건축물 유지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으며, 구성과 내용, 절차 측면 모두에서 실무적 타당성과 법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

□ 조성태 의원 수정동의 발의

○ 수정이유

-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, 제13조의 “위탁”을 “대행”으로 수정하고, 별지 제5호 서식을 현재 「건축물관리법」 제7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서 출력되는 통보서 양식과 통일함.

○ 수정내용

- 안 제13조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업무의 대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위탁”을 “대행”으로 수정
- 별지 제5호 서식 수정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.
-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- 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

의안 번호	939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4. 22.(화)

제안자 : 조성태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, 제13조의 “위탁”을 “대행”으로 수정하고, 별지 제5호 서식을 현재 「건축물관리법」 제7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서 출력되는 통보서 양식과 통일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3조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업무의 대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위탁”을 “대행”으로 수정
- 별지 제5호 서식 수정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의 제목 “(업무의 위탁)”을 “(업무의 대행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위탁”을 “대행하게 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

([] 정기점검, [] 긴급점검, []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)

통보번호						
대지위치						
용도				구조		
건축물 수				연면적 m ²		
세대 수				세대 수		
점검대상 건축물						
순번	명칭	사용 승인일	연면적	세대 수	점검대상 근거	점검기한
1			m ²			
2			m ²			
3			m ²			
지정된 건축물 관리점 검기관	기관명				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소재지					
	전화번호					

상기 건축물이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9조 및 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.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,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「건축물관리점검지침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장·군수

직인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<u>업무의 위탁</u>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건축물관리점검기 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의 작성·관리 및 지정 등에 대 한 업무를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에 <u>위탁</u> 할 수 있다.	제13조(<u>업무의 대행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대행하게</u> -----.

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.

제2장 건축물관리점검기관

제4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, 시·군 홈페이지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. 다만,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

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,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·군수와 협의해야 한다.

제5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)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2.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
4.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에 등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.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.

1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
 2.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
 3.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
 4. 시장·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
-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.

제6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) ① 등재명부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·재개업·폐업(등재 취소)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,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.

제7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)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18조제1

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시장·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④ 시장·군수는 제3항제1호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장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

제8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)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, 시·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·군수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설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.

제9조(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) 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(취소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감리자 교육 이수증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)

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.

제10조(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및 관리)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자 중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모집공고 시 반영된 지정 권역이나 기준을 고려하여 등재 명부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.

1. 시장·군수가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

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

2.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.

제11조(등재 후 사정변경) 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(취소) 신청서를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시

2.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

3.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

4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(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)

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거나,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·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 취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

2.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 또는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

3. 해체공사감리자가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경우

4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12조(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) ① 시장·군수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.

1.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

2.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

3.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
4.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

② 시장·군수는 해체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공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

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.

1. 지하층이 있는 공사

2. 리모델링 등 해체공사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

④ 시장·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조(업무의 대행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·관리 및 지정 등에 대한 업무를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$\sqrt{\quad}$ 표를 합니다.

신청기관	기관명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
	전화번호	
	점검분야(중복 가능)	
	①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: [] *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[] ,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[] ,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[] ② 안전진단: []	

-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.
- 분류는 1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3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4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. 국토안전관리원 6. 한국부동산원 7.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.

등재요건	기술인력 총 명 (건축사: 명, 특급 : 명, 고급 : 명, 중급 : 명, 초급 : 명, 건축사보 : 명)	
	분류	자본금 원
	장비 따로 붙임	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)

충청북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. 선호지역(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교육이수 확인서 6.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
-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
------	-----	--

신고인	기관명	등재번호 및 등재일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전화번호

점검분야	①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: [] *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[],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[],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[]
	② 안전진단: []

변경사항	구분	변경 연월일	변경 전	변경 후

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작성방법	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건축물관리점검기관 [] 휴업
 [] 재개업 신고서
 [] 폐업(등재취소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고인	기관명	등재번호 및 등재일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전화번호	
점검분야	①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: [] * <u>점검대상 규모별 구분</u>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[],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[],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[]		
	② 안전진단: []		
신고내용	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	
	재개업일 년 월 일		
	폐업일 년 월 일		
	휴업·폐업 사유		

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150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건축물관리점검기관 (변경)등재 통보서 원본(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-----	---

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

([] 정기점검, [] 긴급점검, []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)

통보번호	
대지위치	
용도	구조
건축물 수	연면적 m ²
세대 수	세대 수

점검대상 건축물						
순번	명 칭	사용 승인일	연면적	세대 수	점검대상 근거	점검기한
1			m ²			
2			m ²			
3			m ²			

지정된 건축물 관리점 검기관	기관명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소재지	
	전화번호	

상기 건축물이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9조 및 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.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,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「건축물관리점검지침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장·군수

직인

해체공사감리자 등재(취소) 신청서

- 어두운 난(☐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신청구분	[] 등재	[] 취소		
감리원배치 (중복가능)	[] 해체허가 (연면적3천미만)	[] 일부해체신고	[] 해체허가 (연면적3천이상)	[] 비상주
※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의2(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)에 따른 구분				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남[] 여[]
	(서명 또는 인)	자격번호	
	전화번호	팩스번호	
	휴대전화번호		
	사무소명	건축사 개설신고번호 /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	
	대표자		
	사무소 주소		

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

귀하

첨부 서류

-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/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)
- 감리자 교육 이수증(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)
-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

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

연번	감리자 성명 (건축사/건설기술 설계기술용역 업)	자격번호 (건축사사무소)/ 건설기술용역 등록번호	신고번호	사무소명 (대표자)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팩스번호

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

-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남[] 여[]
	(서명 또는 인)	자격번호	
	전화번호	팩스번호	
	휴대전화번호		
	사무소명	신고번호	
	대표자		
	사무소주소		

사유 및 기간	[]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
	[]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
	[]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
	[] 그 밖에 사유
	년 월 일 ~ 년 월 일

「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·군수

귀하

첨부 서류

-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